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=====

현	행	개	정	(안)
[별표]		[별표]		
위 임 사 무		위 임 사 무		
제1호 내지 제18호(생략)		제1호 내지 제18호 (현행과 같음)		
(신설)		19. <u>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중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의 수리</u>	<u>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</u>	<u>동장</u>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1997. 12. 29

행정재무위원회

1. 審査經過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11월 20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1997년 11월 22일 회부

다. 상 정 일 자 : 제53회 정기회 제9차 행정재무위원회('97 .12. 24) 상정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김종박)

가. 제안이유

- 지방세법 [법률 제65406호, 대통령령 제15489호('97. 10. 1 시행), 내무부령 제717호('97. 10. 4 시행)] 이 개정·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을 통·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
(안 제13조의2)
- 구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, 지방세법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)
- 지방세법이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%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적용세율을 표준세율과 같게 규정함(안 제21조의2)

3.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(전문위원 : 이준석)

동 조례(안)의 개정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시행령 및 내무부령 제717호가 지난 '97년 10월 1일 및 10월 4일 개정·시행됨에 따라 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 조례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내용으로 절차나 내용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됨.

4. 修正案의 要旨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손영상위원외 1인

나. 수정이유

-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등 서류 송달에 관한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.

다. 수정 주요골자

-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을 통·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 제13조의2를 삭제
- 기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

라. 수정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審査結果 : 수정안 의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한 수정안

의 안	관련
번호	149

제출년월일 : 1997. 12. 24
제 출 자 : 손영상위원외1인

1. 수정이유

동 개정조례(안)중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임

2. 주요내용

-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을 통·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한 (안 제13조의2) 규정을 삭제
- 기타 부분은 구청 제출 개정안과 같음.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지방세법 제70조, 제188조(1997. 8. 30 개정)
-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, 제39조의2, 제58조(1997. 10. 1 시행)
-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, 제39조(1997. 10. 4 시행)

나. 예산조치사항

- 위원회 수당 - 제114조의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'98년 예산에 편성(60만원)

다. 수정(안) : 별 첨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3조의2를 삭제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지방세심사위원회에 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“이의신청분과위원회”는 지방세법시행령(1997. 10. 1 대통령령 제15489호)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“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”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=====

현 행	개 정 (안)	수 정 안
제6조의2 (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위임)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 (단서 신설)	제6조의2 (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 위임)..... 다만,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.	제6조의2 (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 위임).....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
제8조 (허가 등의 제한) 구청장이 영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	제8조 (허가 등의 제한) 제25조	제8조(허가 등의 제한) ...제25조.....
1~4 (생략)	1~4 (현행과 같음)	1~4(개정안과 같음)
<신 설>	제13조의2 (서류송달의 방법) ①영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·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, 이 경우 송달 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	제13조의2 <삭제>
제14조 (구세심의위원회) ①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구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14조 (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)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(이하 "적부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	제14조 (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) ①구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(이하 "적부심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※ 기타 부분은 구청제출 원안과 같음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14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 11. 21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세법령[법률 제5406호, 대통령령 제15489호('97.10.1 시행), 내무부령 제717호 ('97.10.4. 시행)]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불합리하여진 부분을 보완하기 위함임.

2. 주요내용

- 지방세 고지서 및 독촉장 등 서류의 송달을 통·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3조의2)
- 구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법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, 지방세법이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4조)
- 지방세법이 재산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50%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그 적용세율을 표준세율과 같게 규정함(안 제21조의2)

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규

- 지방세법 제70조, 제188조(1997. 8.30. 개정)
- 지방세법시행령 제25조, 제39조의2, 제58조(1997.10. 1. 시행)
-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, 제39조(1997.10. 4. 시행)

나. 예산조치사항

- 위원회 수당 - 제114조의 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 '98년 예산에 편성(60만원)

다. 개정조례(안) : 별첨

첨 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 조례 중 개정 조례 (안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.

제8조 중 “제27조의2”를 “제25조”로 한다.

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 (서류송달의 방법) ① 영 제3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·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, 이 경우 송달 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) ① 구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(이하 “적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④ 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1조의2(세율)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1. 건축물

가. 주택 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

〈과세표준〉	〈세 율〉
1,200만원 이하	1,000분의 3
1,200만원 초과	3만 6,000원 + 1,200만원
1,600만원 이하	초과금액의 1,000분의 5
1,600만원 초과	5만 6,000원 + 1,600만원
2,200만원 이하	초과금액의 1,000분의 10
2,200만원 초과	11만 6,000원 + 2,200만원
3,000만원 이하	초과금액의 1,000분의 30
3,000만원 초과	36만 6,000원 + 3,000만원
4,000만원 이하	초과금액의 1,000분의 50
4,000만원 초과	85만 6,000원 + 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70

나. 골프장, 별장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: 그 가액의 1,000분의 50

다. 제22조 및 영 제1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에 소재하는 영 제14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 : 그 가액의 1,000분의 6

라. 가목내지 다목 이외의 건축물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

2. 선 박

가. 고급선박 : 그 가액의 1,000분의 50

나. 가목 이외의 선박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

3. 항공기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지방세심사위원회에 대한 적용례) 이 조례 시행전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“이의신청분과위원회”는 지방세법시행령(1997. 10. 1 대통령령 제15489호)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“지방세심사청구분과위원회”로 본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=====

현	행	개	정 (안)
<p>제6조의2 (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위임) 구청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서와 미과세증명서의 발급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. (단서 신설)</p>	<p>제6조의2 (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사무 위임).....</p> <p>...다만,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발급할 수 있다.</p>		
<p>제8조 (허가 등의 제한) 구청장이 영 제2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. 1~4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8조 (허가 등의 제한) 제25조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>1~4 (전행과 동일)</p>		
<p>제14조 (구세심의위원회) ① 구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구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세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.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써 다른 분과 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. ③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한다.</p>	<p>제13조의2 (서류송달의 방법) ①영 제3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통·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과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하며, 이 경우 송달 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4조 (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)①구세에 관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(이하 “적부심사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다만 당연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④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</p>	

현행	개정 (안)																						
<p>⑤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⑥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																						
<p><신설></p>	<p>제21조의2 (세율)①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 <p>1. 건축물</p> <p>가. 주택 :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.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<과세표준></th> <th><세율>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,200만원 이하</td> <td>1,000분의 3</td> </tr> <tr> <td>1,200만원 초과</td> <td>3만 6,000원 + 1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</td> </tr> <tr> <td>1,600만원 이하</td> <td>초과금액의 1,000분의 5</td> </tr> <tr> <td>1,600만원 초과</td> <td>5만 6,000원 + 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10</td> </tr> <tr> <td>2,200만원 이하</td> <td>초과금액의 1,000분의 10</td> </tr> <tr> <td>2,200만원 초과</td> <td>11만 6,000원 + 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0</td> </tr> <tr> <td>3,000만원 이하</td> <td>초과금액의 1,000분의 30</td> </tr> <tr> <td>3,000만원 초과</td> <td>36만 6,000원 + 3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0</td> </tr> <tr> <td>4,000만원 이하</td> <td>초과금액의 1,000분의 50</td> </tr> <tr> <td>4,000만원 초과</td> <td>85만 6,000원 + 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70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나. 골프장, 별장,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: 그 가액의 1,000분의 50</p> <p>다. 제22조 및 영 제14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내에 소재하는 영 제142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건축물 : 그 가액의 1,000분의 6</p> <p>2. 선박</p> <p>가. 고급선박 : 그 가액의 1,000분의 50</p> <p>나. 가목 이외의 선박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</p> <p>3. 항공기 : 그 가액의 1,000분의 3</p>	<과세표준>	<세율>	1,200만원 이하	1,000분의 3	1,200만원 초과	3만 6,000원 + 1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	1,600만원 이하	초과금액의 1,000분의 5	1,600만원 초과	5만 6,000원 + 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10	2,200만원 이하	초과금액의 1,000분의 10	2,200만원 초과	11만 6,000원 + 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0	3,000만원 이하	초과금액의 1,000분의 30	3,000만원 초과	36만 6,000원 + 3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0	4,000만원 이하	초과금액의 1,000분의 50	4,000만원 초과	85만 6,000원 + 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70
<과세표준>	<세율>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 이하	1,000분의 3																						
1,200만원 초과	3만 6,000원 + 1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																						
1,600만원 이하	초과금액의 1,000분의 5																						
1,600만원 초과	5만 6,000원 + 1,6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10																						
2,200만원 이하	초과금액의 1,000분의 10																						
2,200만원 초과	11만 6,000원 + 2,2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30																						
3,000만원 이하	초과금액의 1,000분의 30																						
3,000만원 초과	36만 6,000원 + 3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50																						
4,000만원 이하	초과금액의 1,000분의 50																						
4,000만원 초과	85만 6,000원 + 4,000만원 초과금액의 1,000분의 70																						